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경상남도회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산업안전보건법(법률 제22122호)

○ 개정·공포일 : 2026. 10. 27(화)

※ 2027. 4. 28 시행(공기연장 사유 추가 2026. 10. 27 즉시 시행)

○ 주요내용

- **(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)** 그간 원도급 공사에만 산업안전보건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, **하도급 공사에도 의무적으로 반영**토록 하여 **안전비용 확보**(제72조제1항)
- **(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)**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**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**에 **폭염, 한파 추가**(제70조제1항)
- **(작업중지)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추가** 및 **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**
  ① **(사업주의 작업중지) 근로자 등**은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**되는 경우 **사업주에게 조치 요구** 가능(제51조제2항)
  ※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**수급인의 근로자도 도급인에게 조치 요구 가능**(제51조제3항)
  ② **(근로자의 작업중지) 근로자**는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**되는 경우 **작업중지** 가능(제52조제1항)
- **(과징금)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**에 따라 발생한 **산업재해**로 **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**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% 이내 **과징금 부과**(제161조의2)

붙임 : 1.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·공포 주요내용 1부
2.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

붙임 자료는 우리도회 홈페이지(https://gyeongnam.kosca.or.kr/) - 시·도소식 - 최신공문 6664번 게시물 참고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담당자 제도개선실 주임 이유신 대리 이희승 과장 이정훈 실장 김우배
시행 전건협 경남 제758호 (2026. 10. 29)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shin2025@kosca.or.kr